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KCA P70

Date of issue: 2012-08-16

Revision date: 2013-08-02

Version: R0003.0002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- KCA P70 [MSDS-726]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경화제
- 사용상의 제한 : -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
- 주소 :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18
- 담당부서 : 환경안전팀
- 전화번호 : 061-688-3682, 061-688-3684
- 긴급 전화번호 : 061-688-3507
- FAX 번호 : 061-688-3686
- 이메일 주소 :

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
- 주소 :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시그니처타워 동관 8층
- 담당부서 : Epoxy 사업팀
- 전화번호 : 02-6961-3464, 3481
- 긴급 전화번호 : 02-6961-1114
- FAX 번호 : 02-6961-3492
- 이메일 주소 : epoxy_domestic@kpb.co.kr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급성 독성(경구): 구분4
- 급성 독성(경피): 구분4
- 급성 독성(흡입: 증기): 구분4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: 구분3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: 구분1
- 인화성 액체: 구분3
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: 구분1
- 피부 과민성: 구분1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: 구분1
- 호흡기 과민성: 구분1
- 흡인 유해성: 구분2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



○ 신호어

- 위험

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H302 (경구)삼키면 유해함
- H305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
- H312 (경피)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
-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-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-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- H332 (증기)흡입하면 유해함
- H334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,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
-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(11항 참조(MSDS)).
-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

○ 예방조치문구

1) 예방

- P210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- 금연
-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.
- P240 용기·수용설비를 접지·접합시키시오.
- P241 폭발 방지용 전기·환기·조명·장비를 사용하시오
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.
-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.
- P260 (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(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-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- P285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
2) 대응

- P301+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01+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01+P330+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.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4+P341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,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10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
- P322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.
- P330 입을 씻어내시오.
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33+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- P342+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.
- P370+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(5항 참조).

3) 저장

- 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.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.

4) 폐기

-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·용기를 폐기하시오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- NFPA 등급 (0 ~ 4 단계)

- 보건 : 3, 화재 : 3, 반응성 : 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Cashew, nutshell liq. polymer with ethylenediamine and formaldehyde	-	68413-28-5 / KE-04940	< 72
Xylene ; Dimethylbenzene	-	1330-20-7 / KE-35427	13 ~ 20
n-Butyl alcohol	-	71-36-3 / KE-03867	13 ~ 20
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	-	107-15-3 / KE-13141	< 5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부는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척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피부 확산을 방지하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.

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만약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, CO2, 알콜포, 물분무
- 분말, CO2, 알콜포
- 분말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물뿌림 또는 정규 포말
- 워터젯을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
- 증기는 접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
-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고인화성: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
- 누출물은 화재/폭발 위험이 있음
- 실내, 실외,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
-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(flash back)할 수 있음
-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세요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.
- 인화점이 극히 낮은 물질들로 화재진압시 주수소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십시오.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십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십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십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다량누출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십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십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십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.
- 소량 누출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-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십시오.
- 폐수가 수로, 하수구, 지하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.
-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시오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

-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하십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십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의, 작업화를 사용한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십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시오.
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.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.
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취급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**국내노출기준**
 - [n-Butyl alcohol] : TWA : C 50 ppm C 150 mg/m³ - n-부틸알코올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TWA : 100 ppm 435 mg/m³ STEL : 150 ppm 655 mg/m³ - 디메틸벤젠(오르토,메타,파라-이성체)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TWA : 10 ppm 25 mg/m³ - 1,2-디아미노에탄
- **ACGIH노출기준**
 - [n-Butyl alcohol] : TWA 20 ppm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TWA 100 ppm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TWA 10 ppm
- **생물학적 노출기준**
 - 해당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다. 개인 보호구

- **호흡기 보호**
 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 - 호흡보호구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 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 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가스용)
 -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(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)
 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)
 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- **눈 보호**
 - 미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.
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**손 보호**
 -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.
- **신체 보호**
 -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액체(점성이 있는 액체)
- 색	갈색
나. 냄새	용제냄새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알칼리성
마. 녹는점/어는점	자료없음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> 117 °C
사. 인화점	> 27 °C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없음
카. 증기압	자료없음

타. 용해도	자료없음
파. 증기밀도	자료없음
하. 비중	0.98 at 20℃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없음
너. 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점도	800~1,500cps at 25℃
머. 분자량	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
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십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십시오.

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
 -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,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
- (경구)
 - (경구)삼키면 유해함
- (눈·피부)
 -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 -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 -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급성 독성
 - * 경구 독성
 - [n-Butyl alcohol] : LD50 = 790 mg/kg Rat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LD50 = 637 ~ 1850 mg/kg Rat
 - * 경피 독성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LD50 = 1590mg/kg(mouse)
 - [n-Butyl alcohol] : LD50 = 3402 mg/kg rabbit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LD50 = 560 mg/kg rabbit
 - * 흡입 독성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LC50 = 10 ~ 20 mg/L
 - [n-Butyl alcohol] : Steam LC50 = 8000 ppm 4 hr Rat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LC50 = 58 mg/ℓ 4 hr Rat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중증자극 유발
 - [n-Butyl alcohol] :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중정도 자극성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심한자극(10mg, 24시간, rabbit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중증자극 유발
 - [n-Butyl alcohol] :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심한 자극성

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심한자극(750ug, 24시간, rabbit), 심한자극(750ug, rabbit) ; 토끼에 대한 눈자극성 시험결과 100% 에틸렌 디아민의 점안으로 영속적인 눈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고됨.
- 호흡기 과민성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사람에서 호흡기 과민성이 보고됨.
- 피부 과민성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일본 직업성 피부염 환자의 패치 테스트 - 양성 ;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 과민성 시험 - 양성
- 발암성
 - * 산업안전보건법
 - 자료없음
 - *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
 - 자료없음
 - * IARC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3
 - * OSHA
 - 자료없음
 - * ACGIH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A4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A4
 - * NTP
 - 자료없음
 - * EU CLP
 -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
 - [n-Butyl alcohol] :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음성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우성치사시험 - 음성
- 생식독성
 - [n-Butyl alcohol] : 임신한 흰쥐에서 흡입 노출시 어미에 독성이 인정되는 농도에서 태아의 골격 변이가 나타남.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마취작용을 일으킴
 - [n-Butyl alcohol] : 사람에서 흡입 노출에 의해 두통 및 인두에 자극이 나타남. 동물 실험에서 마취 작용 또는 중추신경계 억제가 나타남.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인체에 눈, 코 자극, 만성 두통, 가슴통증, 뇌파 이상, 호흡곤란, 청색증, 발열,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며, 호흡기계, 신경계기능 장애를 유발함
- 흡인 유해성
 - [n-Butyl alcohol] : 탄소원자가 3-13개인 n-알코올류
- 고용노동부고시
 - * 발암성
 - 자료없음
 - * 생식세포 변이원성
 - 자료없음
 - * 생식독성
 - 자료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- 어류
 - [n-Butyl alcohol] : LC50 > 100 mg/l 96 hr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LC50 = 220 mg/l 96 hr
- 갑각류
 - [n-Butyl alcohol] : EC50 = 1983 mg/l 48 hr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LC50 = 3 mg/l 48 hr
- 조류
 - [n-Butyl alcohol] : EC50 = 28 mg/l 48 hr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잔류성
 - 자료없음
- 분해성

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BOD5/COD = 0.008

다. 생물 농축성

- 생물 농축성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BCF = 0.07
- 생분해성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Biodegradability = 94 (%)

라. 토양 이동성

-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

- 자료없음

13. 폐기 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-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시오.
-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시오.
- 증발·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.
- 응집·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.
- 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·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리 후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시오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 (UN No.)

- 2734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

- Amines, liquid, corrosive, flammable, n.o.s. or Polyamines, liquid, corrosive, flammable, n.o.s.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8

라. 용기등급

- II

마. 해양오염물질

-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E (Non-water-reactive flammable liquids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C (Flammable corrosive liquids)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물질
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lcohol)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- **노출기준설정물질**
 - 해당됨 (n-Butyl alcohol)
 - 해당됨 (Xylene ; Dimethylbenzene)
 - 해당됨 (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)
- **관리대상유해물질**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lcohol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- **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**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lcohol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**유독물**
 - 해당없음
- **관찰물질**
 - 해당없음
- **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**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; Dimethylbenzene)
- **사고대비물질**
 - 해당없음
- **취급제한물질**
 -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됨 : 제2석유류 (지정수량 : 1000리터(비수용성액체), 2000리터(수용성액체)) (다만,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.)
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(지정수량 : 제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))
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(지정수량 : 제4류 제2석유류(수용성))
- [n-Butyl alcohol] : (지정수량 : 제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))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폐유 액체상태)에 해당됨.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**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**
 - 해당없음
- **EU 분류 정보**
 - * **확정분류 결과**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R10 Xn; R20/21 Xi; R38
 - [n-Butyl alcohol] : R10 Xn; R 22 Xi; R37/38-41 R67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R10 Xn; R21/22 C; R34 R42/43
 - * **위험 문구**
 - [n-Butyl alcohol] : R10, R22, R37/38, R41, R67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R10, R20/21, R38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R10, R21/22, R34, R42/43
 - * **예방조치 문구**
 - [n-Butyl alcohol] : S2, S7/9, S13, S26, S37/39, S46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S2, S25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S1/2, S23, S26, S36/37/39, S45
- **미국 관리 정보**
 - * **OSHA 규정 (29CFR1910.119)**
 - 해당없음
 - * **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**
 - [n-Butyl alcohol] : 2267.995 kg 5000 lb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45.3599 kg 100 lb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2267.995 kg 5000 lb

- 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4535.99 kg 10000 lb
- 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- [1,2-Ethanediamine ; Ethylenediamine] : 2267.995 kg 5000 lb
- 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- [n-Butyl alcohol] : 해당됨
 - [Xylene ; Dimethylbenzene] : 해당됨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-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-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- 해당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4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12-08-16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1 회, 2013-08-02

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